

여비규정

제정 2012.09.27.

개정 2014.10.21.

개정 2017.06.13.

개정 2020.09.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 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시 융합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비 또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

제5조(여비일수 계산) ①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 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한다.

② 여행 도중 선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6조(출장지의 구분) 출장지는 융합원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내 출장지로 하고 기타 지역을 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0.09.15.)

제7조(여비의 정액) 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수로 여행기간중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 ③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 ④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목적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비 정액 중 운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교육훈련여비)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09.15.)

제9조(국외여비) 국외여행시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융합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등급적용기준) 융합원 직원과 공무원 여비 등급간 적용은 아래 표에 의한다. (신설 2014.10.21., 개정 2017.06.13., 2020.09.15.)

법인 직급	공무원여비규정 등급	공무원 대상
원장	제1호 '다' 목	총장, 처장, 1급 공무원 등
1급	제2호 '가' 목	조교수, 교감, 3급부터 5급 공무원 등
2급 이하	제2호 '나' 목	각 등급에 해당 없는 공무원

부칙(2012.09.2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0.2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6.13.)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9.15.)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삭제 2017.06.13.)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삭제 2017.06.13.)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작성요령 (삭제 2017.06.13.)